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

고용보험 안내

CONTENTS

01. 고용보험에 대하여 | 3
02. 피보험자관리 | 6
03. 고용안정사업 | 7
04. 직업능력개발훈련 | 17
05. 실업급여 | 21
06. 모성보호지원 | 24
07. 자영업자 고용보험 | 27
08. 예술인 고용보험 | 30
09. 노무제공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32
10. 국민취업지원제도 | 35
11.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36
12.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37

01 고용보험에 대하여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적용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적용제외 ①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③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④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 적용이 제외됨** 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연적용 대상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외국인 근로자: 원칙은 적용제외 ※ 단,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⑥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사업체계

구 분	주요 내용	보험료율
실업급여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 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지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만 지원	• 근로자: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 예술인·노무제공자: 1.6% (근로자 0.8%, 사업주 0.8%)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고용유지지원, 고용창출지원, 고용촉진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직업정보의 제공 및 지원기반 구축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등이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 등에게 일정 비용 지원 - 사업주훈련지원, 일학습병행제도 등	

고용보험 심사제도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 심사처리절차

보험료 납부 및 보수총액 신고

○ 사업주는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자료를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건설업·벌목업 제외)

•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
  -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한 경우 3% 할인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0.90%)는 사업주가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함
-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14.1.1. 시행)하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 보수총액신고,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요건] 소규모 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100 지원(근로자는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하되,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근로자 수 10인 미만, 월 보수 250만원 보험료지원금(예시)> (단위: 원)

구 분		지원 전 보험료 부담액		보험료지원금(80%)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종사자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22,500(20,000)	112,500	18,000(16,000)	90,000
사업주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28,750(20,000)	112,500	23,000(16,000)	90,000

※ 보험료율: 고용보험 ▶ 근로자 2.05%(사업주부담분 1.15%), ▶ 예술인·노무제공자 1.6%(사업주부담분 0.8%), 국민연금 9%(사업주부담분 4.5%)

○ [신청 및 지원방법] 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신청,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노무제공자 중 플랫폼 기반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www.4insure.or.kr)으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02 피보험자관리

구 분	내용 및 기한	제출 서류	제출 기관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개시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
	사업주는 사업 종료, 이직 등으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취득·상실·이직이 한 번에 처리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취득·상실·이직이 한 번에 처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과태료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미신고(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4대보험 통합신고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4대보험 공통사항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접수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등 각 사회보험 EDI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등 온라인 신고도 가능

03 고용안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실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휴 업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개월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 [일반업종]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단, 대규모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 지원한도: 1일 6.6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 단, 대규모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 지원한도: 1일 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휴 직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무 급 휴 업 · 휴 직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 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기간: 총 180일 이내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고용창출장려금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지원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 지원기간: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지원(다만,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 (전체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대 30명) ▶ (전체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 제도 도입·시행 후 3개월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증가하여야 함	

구 분		증가 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지원 기간	지급액 (3개월)	지원 기간	지급액 (3개월)
비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	240만원	1년	120만원
	중견기업	1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2년	240만원	2년	120만원
	중견기업	2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

※ 지원한도
▶ (증가 근로자 인건비) 한도 없음
▶ (임금보전)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에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국내복귀기업 지정일 이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신규 고용 후 3개월 마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 최대 360만원 ▶ 지원기간: 2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사업신청 후 승인 필요] 사업승인 이후 고용한 근로자 지원 ※ 일부 직무(42개)를 지원제외 직무로 지정하고 그 외 직무이면 지원하되,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및 만 5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지원 ☞ 지원제외(42개) 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연 최대 480만원 - 지원기간: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 (전체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최대 30명) ▶ (전체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조치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최대 2개월 이내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인정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대상	지원내용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정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 월 정액 50만원 지원 (임금보전액20+간접노무비30)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미만 → 월 정액 3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30) ※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지급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 • [지원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최초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 기업별 최대 100명까지 지원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누적 유지)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유연근무제 유형 >

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고용안정장려금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3개월 단위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재택·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① 재택·원격근무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구입,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②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구입, 설치하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 **[지원금액 및 한도]** 사업주 투자비용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시설 >

종 류	지원금 용도
정보 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 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유 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 근무제	15만원 (월 6~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 (1년간)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간접노무비] 월 (정액)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정액)20만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1개월 단위

청년내일 채움공제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공제 부금을 공동으로 적립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400만원 적립 시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함께 적립하여 만기금 **1,200만원(+이자) 수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재학 중 이력 불포함) ※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자 • [기업] 가입대상 청년의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청년부담금: 청년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 → 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정부 → 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청년, 기업: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콜센터로 문의(국번없이 1350 → 3번 → 8번)

고령자계속 고용장려금

○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만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30% 초과하는 기업제외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지원금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별로 계속고용 1인당 분기 9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분기 단위 •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일 것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과거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금액]** 분기별 월평균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분기 단위 •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 사업공고를 통해 예산범위 내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신청
설치비	시설전환비	대규모 기업	단독	3억원	- 소요비용의 60% 한도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시설인 경우 80%)	근로복지공단
			공동	6억원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4억원	- 소요비용의 90% 한도 (시설 매입비용의 경우 40%)	
			공동 (2~4개소)	10억원		
			공동 (5개소 이상)	20억원		
	시설개보수비		단독·공동	1억원		
	교재교구비	대규모 기업		5천만원	- 소요비용의 60%(대규모), 80%(영아·장애아 시설), 90%(우선지원) 한도 -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한도로 지원(공통)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인건비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월 30~138만원	- 사업장 규모 및 보육교사 등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금액 (1인당 월 지원금액)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원	138만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만원	121만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만원	86만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만원	52만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신청
			- 유급고용일수 2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현원)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방과후 보육교사, 시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배치기준 외 보육교사도 지원 가능 ※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제외	
운영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월 200~520만원	- 전월 말일 기준 보육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	

보육아동 수(현원)	지원금액
100명 이상	월 520만원
80명 이상 100명 미만	월 440만원
60명 이상 80명 미만	월 360만원
40명 이상 60명 미만	월 280만원
40명 미만	월 200만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업의 성과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의 일터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영역] ①노사파트너십 구축 ②임금체계 개선 ③평가체계 개선 ④작업조직·환경개선 ⑤평생학습체계 구축 ⑥장시간근로개선 ⑦고용문화개선 ⑧장년고용안정지원 ⑨안전일터 조성

※ 10주(1개 영역)~21주(3개 영역) 동안 전문 컨설턴트가 주 1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해결 지원

- 컨설팅 외에도 CEO코칭, 인사·노무 담당자, 일반근로자 등 교육 무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기업당 최대 3개 영역 전문컨설팅 무료 지원 • CEO코칭, 인사·노무 담당자 등 교육 무료 지원

취약계층 취업촉진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지원

사업구분	지원내용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운영	실직자 또는 구직자가 실직 및 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상담사가 심리상담을 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특강 등을 제공
채용행사 위탁 운영	구인·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에게는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

취업· 직업정보 등

○ 워크넷(www.work.go.kr)
- 구인·구직자에게 인재정보, 일자리정보 등 각종 취업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워크넷 운영('98~)
- 구인·구직정보 제공,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온라인 채용대행 서비스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일평균 91만명이 방문하는 국가대표 취업지원 포털
- 고용센터·자치단체·새일센터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의 취업업무 지원

○ 직업진로(www.work.go.kr/jobMain.do)
- 직업심리검사(청소년, 성인), 직업정보(직업전망, 직업사전, 신직업 등), 학과정보, 진로상담 및 취업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공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관련 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안내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서비스 제공

○ HRD-Net(www.hrd.go.kr)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훈련비용 신청, 자격정보 등 제공

04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

-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연간지원 한도액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100%

※ 지원한도 최소금액: 500만원
※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까지 지급
※ 사업주가 다른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급

- 지원액 산정 방식

집체훈련·현장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스마트훈련
❶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❷ 출석률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 (❶ + ❷)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우선지원) 90~100% (1,000인 미만 기업) 60% (1,000인 이상 기업) 40%	❶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❷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 (❶ + ❷) ×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0.7~1.0)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우선지원) 90~100% (1,000인 미만 기업) 80% (1,000인 이상 기업) 40%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0.7~1.0)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우선지원) 90~100% (1,000인 미만 기업) 80% (1,000인 이상 기업) 40%	❶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❷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 (❶ + ❷) ×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0.7~1.0)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우선지원) 95~100% (1,000인 미만 기업) 90% (1,000인 이상 기업) 60%

기간제 등 훈련우대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 추가 지원 ○ 임금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훈련지원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금 및 훈련비 지원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그 외 기업: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8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지원내용**: ①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 -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② 훈련비지원: 집체·현장훈련과 동일
대체인력 채용지원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임금 지원 ○ [지원수준]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공공기관 등 **지원내용**: ① 시설·장비비: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 내에서 6년 동안 지원하되, 6년 경과 후에는 차등 지원 ② 운영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100%)를 4억원 한도로 지원 ③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프로그램개발에 소요되는 비용(100%)을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 ④ 훈련비·훈련수당: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 방식 등으로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강생만 지원 ※ 고숙련,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훈련 우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의 대표 -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 대표 -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단, 원격 대학의 재학생은 제외) - 만 75세 이상인 자	• **[훈련비]**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지원 **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특화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은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0~55%)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국기직종 훈련과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 • **[특별훈련수당]**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및 총 350시간 이상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일부 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급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육성 산업직종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www.hrd.go.kr)으로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HRD-Net)·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접속 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

일학습병행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 형성시키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학습기업] 해당 분야 기술력, 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높은 인력 양성 의지를 갖추고 있는,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기업 [학습근로자] 1년 이내 신규 입직자 및 특성화고, 전문대학·대학교 재학생 등	[학습기업]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등 훈련 인프라 지원 ① 훈련비(단가): 현장훈련(OJT) 4,000원, 현장외훈련(Off-JT) 6,500원 ② 전담인력수당 • 기업현장교사 수당: 기업현장교사의 일학습병행 훈련실시, 학습근로자 관리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학습근로자수에 연동하여 연간 400~1,600만원) • HRD담당자 수당: HRD담당자의 행정·전산업무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월 25만원) ③ 훈련장려금: 학습근로자의 훈련참여에 따른 학습기업의 생산성 손실보전 및 훈련장려를 목적으로 지원(월 40만원, 단 20만원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 시 지원) [학습근로자] 학습근로계약 체결로 근로자로서 보호, 훈련과정 이수 후 내·외부평가 통과 시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 부여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대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에 참여하는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100% 이하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1인당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 한도로 연리 1% 대부,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 훈련 수강 시부터 훈련기간 종료 시까지 월 단위 대부 지원

구직급여

지원내용	지원요건
• 근로(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 24개월간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간 12개월 ** 이직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인정(~'23.6월) ※ '23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인정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인정

○ [지원수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평균 보수)의 60%를 지급

※ '23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6,000원(예술인), 26,600원(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 신청방법 실직 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이후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상담 →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연장급여

-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미지원)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지시한 사람으로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최대 2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고 18세 미만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으며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실업 크레딧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 지원, 본인 부담 25%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보유한 자는 제외될 수 있음	구직급여수급자는 고용센터(수급 자격 인정 신청 시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가능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예술인·노무제공자는 미지원)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당 7,530원 ※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광역구직활동비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료] 실비(1박당 상한액 서울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에 50,000원) [운 임] 실비(교통수단별 중등급 수준)
이 주 비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경우	5톤 이하는 실비(5톤 초과 시 5톤까지는 실비+5톤 초과 7.5톤까지는 실비의 50%) ※ 사다리차 이외 옵션은 제외

06 모성보호지원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간 사용 가능(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특례]**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특례 첫 3개월 급여는 '사후지급금' 제도 미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 고용센터에서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가능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frac{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는 5~90일의 유산·사산 휴가 청구 가능 ○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구 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최대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원 -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사산의 경우는 '23년 7월 이후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중 최초 5일분 지원(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5일분 상한액 401,910원)

0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 중인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사업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기한 없음) * 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②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 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등)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서 제출
기준보수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단위: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보험료 납부	○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1~7등급 선택 가입자 - **[내용]** 최대 5년간 1~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 지원, 5~7등급은 20% 지원 -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원
구직급여	○ 지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2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건강악화·자연재해 등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지급수준 및 기간 -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210일까지 지급 <소정급여일수> ○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지원 ** 국기직종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과정은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0~55%) • [훈련장려금] 1일 5시간 미만은 9천원, 5시간 이상은 18천원 지원* (단위기간 80% 이상 출석 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www.hrd.go.kr)으로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HRD-Net)·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접속 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

08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 [적용제외] ①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한 경우,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 평균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피보험 자격관리	○ [원칙]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 ○ [도급사업 특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사업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사업주 의무 부담 ○ [이중취득] 예술인의 다수 사업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 [보험료] 월평균보수의 1.6%(예술인, 사업주 각 0.8%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5%)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소득 확인 및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80만원) 적용
구직급여	○ 지급요건 ①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충족 필요 - 예술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구직급여	②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종료,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 (예)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 지급수준 및 기간 - **[구직급여일액]**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최대 6.6만원)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4주로 연장** -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①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②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수준·기간]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보수의 100%**, 출산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 다만, 지급 기간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출산일 이전 18개월간의 월평균보수 **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09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 **('21.7월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22.1월 적용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2.7월 적용직종)**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일반·특수형 자동차운송기사, 곡물가루·곡물·사료운송기사),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적용제외] ①**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한 경우, ②**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피보험 자격관리	○ [원칙]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 ○ [이중취득] 노무제공자의 다수 사업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 **[보험료]** 월보수액의 1.6%(특고, 사업주 각 0.8%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보수 산정 및 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소득이 기준보수(133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기준보수 적용 • **(직종별 경비율)** 직종별 경비율은 소득세법상 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단, '22.7.1. 추가적용 5개 직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이 없어 고용부 소득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경비율 사용) * 보험설계사 25.0%,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22.0%, 택배기사 18.2%, 대출모집인 23.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3.5%, 방문판매원 22.0%, 대여제품방문점검원 22.0%,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24.2%,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23.5%, 퀵서비스기사 27.4%, 대리운전기사 24.1%,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30.3%,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관광통역안내사 25.6%,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29.3% ※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는 제외), 골프장캐디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적용 • **('22년 기준)**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4,310,000원,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3,150,000원, 화물차주(일반·특수형 자동차운송기사, 곡물가루·곡물·사료운송기사) 4,830,000원, 골프장 캐디 2,699,994원
구직급여	○ 지급요건 ①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필요 -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 수급 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종사 필요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②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종료,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❶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서, ❷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③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 지급수준 및 기간 - **[구직급여일액]**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최대 6.6만원)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 -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①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②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수준·기간]**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보수의 100%**, 출산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 다만, 지급 기간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출산일 이전 18개월간의 월평균보수 **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80만원

10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수급자격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월 2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하는 특고·프리랜서 등도 참여 가능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및 특정계층* 소득 무관)	무관	무관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 부모,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Ⅰ&Ⅱ유형 공통)

-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 소득지원

구분	소득지원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간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기본)의 50%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특정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11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란?	○ 기업의 일자리 유형별로 채용지원서비스에서 고용여건 개선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지원대상	○ 근로조건은 양호하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구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임금 수준, 작업환경, 고용여건 개선 등 지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내용	○ **(적극적 진단·컨설팅)** 일자리 특성, 구인 직종 및 임금·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유형 분류 - 센터 담당자 또는 전담팀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기업진단, 디지털기업 지도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등 적극적 진단 ○ **(맞춤형 지원)** 구인·구직 알선이 필요한 기업은 AI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 제공, 구인애로 기업은 집중 채용 알선, 고용여건 향상 지원 등 적극 지원 - 고용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은 고용부 및 관계부처의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기업의 인지도 제고 등의 지원 정책 연계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가) ◎ 복지수준(기숙사 등) ◎ 채용요건(기업인지도, 인력확보 가능성 등) — 전담자 지정, 기업사례관리협의체 운영 ▶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경기 및 기업체감도 ◎ 산업전망 ◎ 수요 분석 — 디지털 기업지도 활용 + 기업 구인직종·임금 ▶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인사노무 컨설팅 - 맞춤 인재 양성(훈련 연계) - 인프라 개선, 인지도 향상 ◎ 종합 솔루션 제시 ▶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 밀착 지원 ◎ 정부지원사업 연계 ◎ 개선현황 모니터링 — 고용여건 ↑ 채용여력 ↑ **5 채용대행 등 집중 지원**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상담 후 방문 신청 - 9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범운영 중 * '23년 하반기 4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운영 예정

시범센터	주소	대표전화	시범센터	주소	대표전화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4층	02-2004-7880~3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4층	053-667-6092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02-2639-24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7층	053-605-6509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4층	032-460-4830	전주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4층	063-270-9140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4층	031-412-6923~4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9층	041-620-7489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5층	051-860-2054			

12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란?	○ AI기반 잡케어(Job Care)로 개인의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경력설계·유지·전환 등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1:1로 제공하는 심층상담프로그램
참여대상	○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 **특히,**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 지역 구인애로 업종 취업희망 구직자, 진로지도**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등에게 추천
지원내용	○ 제공서비스 ①잡케어(Job Care)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②1:1 심층 상담을 통한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③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1 구직자 역량 진단**: ◎ **심리적 특성**(적성·흥미) ◎ **교육**(전공), **훈련** ◎ **경력, 자격** ◎ **직무역량**(보유스킬) — 전문컨설턴트 전담 지정 ▶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고용동향 및 직업전망** ◎ **수요 분석** + **개인 희망직종·임금** ▶ **3 경력개발 컨설팅**: ◎ **적합직업 추천** ◎ **경력개발 설계** (훈련, 자격, 일경험) ◎ **경력개발 로드맵 제시** ▶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 심층상담 ◎ 개인별 맞춤 경력관리 ◎ 적합서비스 제공·연계 — 취업의욕 ↑ 직무능력 ↑ **5 적합일자리 집중 매칭** AI기반 잡케어시스템 활용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6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범운영 중 ※ '23년 하반기 4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운영 예정

시범센터	주소	대표전화	시범센터	주소	대표전화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4층	02-2004-7860~3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4층	053-667-6099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4층	032-460-4714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 3층	062-609-8633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2층	051-860-2058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 56, 4층	042-480-3993

More Information

워 크 넷

채용정보, 내 주변 채용정보, AI추천, 직업진로, 고용정책 등 안내

안드로이드

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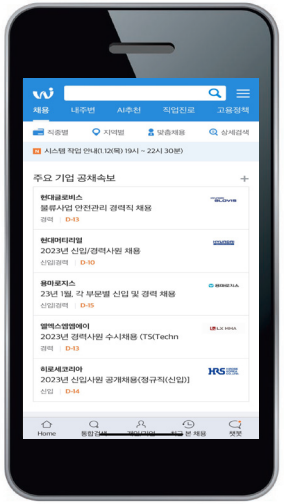

고용보험 제도안내 및 민원신청

고용보험 민원신청
(실업인정 신청, 취업사실 신고, 실업급여 수급 내역조회,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드로이드

iOS

HRD-Net

구직자 및 근로자 직업훈련과정 안내, 직업훈련지원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 훈련지원, 일학습병행)

안드로이드

iOS